

선박안전법 전부 개정

◆ 개정사유

- 해상에서 안전항해를 위하여 선박검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수상 호텔 · 수상공연장과 같은 부유식해상구조물과 일부 선박에 대하여도 선박의 감항성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이법의 적용대상에 포함.
- 선박에서 선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선박소유자의 선장에 대한 화물정보제공을 의무화하며, 산적(散積)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하여 강화된 검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선박안전에 관한 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전면 개편
- 선박에 적재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관리를 국제협약에 맞추어 강화하고, 정부대행검사기관을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발전 · 육성하기 위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함.
- 그 밖에 외국 선박에 대한 이중 선박검사제도를 폐지하여 해상운송규제를 완화하고 재량행위를 투명화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려는 것임.

◆ 주요개정 내용

- 이 법의 적용범위의 확대(안 제3조)
 - 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어선이 전체 어선의 약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선박검사 대상 등 선박안전관리 법령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해상에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는 등 이 법의 적용범위의 확대가 요구됨.
 - 종전에 선박안전관리 법령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선박 중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과 13인 이상이 상시 이용하는 수상호텔 ·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해상구조물에 대하여도 선박의 감항성 확보 및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.
 - 선박의 안전설비 등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상항해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선장의 권한 및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(안 제31조 · 제32조 및 제36조)
 - 선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, 특히 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화물과 관련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 -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과 관련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, 항해용 간행물을 선박에

비치하도록 하며, 화주는 선박 또는 승선자에게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미리 제공하도록 함.

- 선박에 있어 선장의 판단이 존중되고, 선박에 적재되는 화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화물의 적재 및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선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○ 예인선항해검사의 실시(안 제43조)

- 예인선은 그 특성상 크고 무거운 화물을 적재한 부선을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예인하여야 하나, 능력 이상의 부선을 예인함으로써 예인에 사용되는 줄이 항해 중 절단되어 부선이 항로상에서 표류 · 침몰하는 등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- 예인선의 선박소유자가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인설비 및 항해조건 등을 감안하여 특정 부선 또는 구조물 등의 예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예인선검사를 받도록 함.
- 과도한 무게의 예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표류 · 침몰 등 예인과 관련된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○ 선박검사기술협회 명칭 변경(안 제45조)

- 선박검사기술협회는 선박안전법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, 정부를 대신하여 어선 및 소형선박에 대한 검사업무를 담당하고, 선박안전기술에 관한 연구, 선박의 설계 및 감리,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행하고 있으며, '협회'의 명칭은 이 분야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의단체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, '협회' 명칭으로 인한 각종 활동에 제약이 있고 기능에도 맞지 않음.
- '선박안전기술공단'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근거, 정관 및 사업 등을 정하고, 조직 · 운영 및 사업수행에 따른 정부의 경비보조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.
- 선박검사 등에 대한 정부업무를 대행하고 선박 또는 선박시설에 관한 기술의 연구 · 개발 및 보급 등으로 해양안전에 관한 기술진흥을 도모할 전문기관으로 육성 · 발전시키고자 함.

